

제431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1월21일(수)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2)
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1)
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9)
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1)
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9)
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2)
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4)
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8)
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6)
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1)
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3)
1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0)
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5)
1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2)
1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3)
1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3)
1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4)
1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1)
1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7)
2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3)
2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2)
2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4)

2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4)
2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1)
2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7)
26.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8)
27.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0)
28.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6)
29.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4)
30.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5)
31.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9)
32.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5)
33.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6)
3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1)
3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7)
3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9)
3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0)

상정된 안건

1.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2) 5
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8) 10
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6) 10
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1) 10
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3) 10
1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0) 11
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5) 11
1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2) 11
1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3) 11
1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3) 11
1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4)	11
1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1)	11
1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7)	11
2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3)	11
2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2)	11
2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4)	11
2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4)	11
2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1)	11
2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7)	11
26.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8)	11
27.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0)	11
28.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6)	11
29.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4)	11
30.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5)	11
31.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9)	11
32.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5)	11
33.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6)	11
3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1)	20
3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7)	21
3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9)	21
3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0)	21
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1)	26
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9)	26
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1)	26
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9)	26
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2)	26
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4)	26

(11시07분 개의)

○소위원장 김용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7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위원들이 오늘 전원 불참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탁법 등 오늘 심사하고 처리할 법들은 모두 민생법안입니다. 정쟁을 이유로 민생법안 심사마저 외면하고 이 자리에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교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왜 국민의힘이 안 들어온 거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당대표가 단식 중이라서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영교 위원 당대표는 왜 단식을 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저도 모르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느라고 한 거고요.

○소위원장 김용민 진짜 모르겠습니다, 당대표 왜 단식하는지를.

○서영교 위원 아니, 통일교 법안, 통일교 특검 통과시키라고 단식하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저희가 통일교 법안 심사했지 않습니까? 통과를 국힘이 반대하고 있어서 단식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요. 통일교 특검 빨리 통과시키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단식을 왜 하시는 겁니까? 통일교 특검을 빨리 통과시키게 들어오면 좋겠고요.

이번에 여러 가지가 드러났는데 신천지,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탄압을 받았다고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는 이만희의 증언 녹취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종교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불법의 내용들을 전부 다 상설특검을 통해서 수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이 모두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서 들어와서 심사하고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회의는 공탁법 그리고 유류분에 관한 헌법불합치 문제 그리고 부산에도 필요하다고 광규택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해사법원 등에 관한 내용 아닙니까? 그것을 필요할 때는 들어오고 또 자기네 마음대로 안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 챙길 것 있을 때만 들어오고 이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력히 문제 제기하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오늘은 한덕수에 대한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한덕수라고 하는 내란 부우두머리가 요즘 호텔과 이런 곳을 다니는 것이 언론에 포착이 되어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법원이 그 사람 구속영장 기각시켜서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법원이 확실하게 법정구속으로 선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내란범 윤석열에 대해서 백대현 부장판사가 ‘공수처의 수사는 적법했다, 체포영장은 적법했다’ 판결을 내렸는데 그것 적법하지 않다고 판저 앞에 갔었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4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내란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빨리 들어와서 법안 심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시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이세진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성의껏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2)

(11시11분)

○소위원장 김용민 의사일정 제1항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세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진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 법안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박균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자료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 출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 제3조 1항 및 제19조 관련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공탁물 외 법원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경우에도 매년 그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법원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근거하여 공탁금과 유사한 성격의 법원보관금을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공탁금 보관은행을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으로 함께 지정하여 출납, 예탁, 보관, 환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금과 달리 법원보관금의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근거가 없어 운용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수익금이 공적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보관은행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보관은행의 운용수익금 중 일정 부분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고 과도한 수준의 운용수익금이 보관은행에 귀속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법원은 2026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에 법원보관금 출연금으로 400억 원이 추가될 것을 전제로 수입 계획을 편성하였고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공탁법 개정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페이지, 부칙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 관련 사항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일 외에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부칙 수정안에 대해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협의하여 적용례와 경과조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문대비표 관련 사항은 6페이지와 7페이지에 수록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개정안은 법원보관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금이 보관은행에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수익금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재원으로 조성되어 공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사원에서 2022년 8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셨고요 법원행정처 산하에 있는 공탁금관리위원회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2024년도에 논의를 해서 위원들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법원보관금에 대해서도 운용수익금 출연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작년부터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개정 취지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 내용은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범위나 방법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마련된다면 제도를 차질 없이 정비해서 안정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음은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원보관금은 공탁금과 같이 은행에서 보관·운용하는 구조이지만 공탁금과 달리 보관은행 출연 의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관금에 대해서도 출연금 제도 도입을 통해 법원보관금의 운용수익 중 일부를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전문위원님, 공탁·보관금이 얼마나 되며 운용수익금은 얼마나 되나요?

○전문위원 이세진 운용수익금은 400억 정도 됩니다.

○서영교 위원 1년예요? 1년에 400억, 운용수익금이?

○전문위원 이세진 예.

○서영교 위원 보통 법원은 어느 은행에 넣어 놓나요? 각급 법원마다 넣어 놓는 은행이 따로 있나요?

○박균택 위원 주로 신한은행이 많습시다.

○서영교 위원 주로 신한은행인가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나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서영교 위원 예.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우선 가장 큰 규모가 공탁금입니다. 그래서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탁금에 관해서는 그 운용수익을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해서 저희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운용하도록 제도가 돼 있는데요, 공탁금의 규모는 1년에 11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이 24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은행의 그 수익금 2400억은 공적기금으로 활용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지금까지 운용을 해 왔습니다.

공탁금 은행 지정과 관련해서는 5년마다 한 번씩 지방 권역을 나눠서, 입찰이라고 할까요 공탁금 은행을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은행에서 응모를 하고 공탁금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해당 은행을 선정하고요 5년 동안에는 매년 적격심사를 해서 적격심사가 통과되면 그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관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저희가 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예납이랄지 경매 대금을 미리 납부하게 되는데 그걸 찾아가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금원을 보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공탁금 보관은행에다가, 이러한 법원보관금 또한 공탁금 관리은행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해 왔었는데요 이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그것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은행에서 수취할 수 있는 구조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출연이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위원회의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고요. 법원보관금의 규모는 1년에 한 2조 삼사천억 정도 되고 그중에 수익금을 한 400억 정도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법은 공탁에 관한 법이지만 공탁금은 잘 운용되고 있고 보관금에 관한 것들이 근거가 없어서 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현재 법률안에는 공탁금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법원보관금도 추가하는 내용이 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그런 김에 한 번 더 여쭙보면, 그동안 보관금 수익이 매년 400억이 났는데 그것이 다시 이자로 붙어 가지고 올라가는 형태인가 보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은행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은행이 매년 400억씩 수익을 가져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서영교 위원 아주 노났네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법원보관금도 운용수익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달라는……

○서영교 위원 그러면 은행이 400억씩 수익을 가져가고, 마찬가지로 공탁금도 2400억 되는 수익금 중에 은행들이 가져가지만 2400억을 다 씁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보관·공탁금 운용 지정 은행으로 선정이 되면요 그들도 필요한 경비가 있기 때문에 경비를 제외하고 운용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 운용수익은 전부가 공적기금으로 환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공탁금에 대해서는.

○서영교 위원 공적기금으로 어디로 환원이 돼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일단 공탁금관리위원회로 출연을 하고요 공탁금관리위원회에서 그 기금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라는 것으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위원회에서 그 금원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판에 관해서 국선변호료로 지급을 한다랄지 예산편성으로 반영이 되는 구조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 돈에서 국선변호료가 지급이 됩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국선변호료뿐만이 아니라 재판 지원에 관련된 여러 예산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명목하에서 지출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명목하에 쓰이는 내용들을 좀 보내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잘 쓰이는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너무 중요한 법안이고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봤는데 은행이 이걸 가지고 가고 있으니 이것도 회한한 논리다. 은행은 이 수익을 다시 붙여서 복리로 계속 이자를 불러 낸다든지 이렇게는 안 되는 모양이지요, 아까 보관금 같은 경우에?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보관금이 종전에는 그냥 은행에서 가지고 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것을 은행에서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 현황은 잘 모르겠고요.

○서영교 위원 아무도 주인이 없었군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여하튼 운용수익금만큼은 국고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 제도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서영교 위원 적극 동의하고 이 법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눈 가리고 아웅 했던 것이 왜 이대로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좀 있고요. 저는 이런 비용들이……

위원장님, 그냥 기록으로 좀 남기고 싶은데, 제가 기재위를 하다 보니 어떤 메인 은행은 아주 부자고 지방에서 운영하는 은행들은 항상 적자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에도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면 이런 내용들을 지방은행이 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으면 좋겠다. 그런데 신한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인가 이렇게 3개 금융은 지금 보니까 70%가 외국 자본에 넘어갔어요. 우리는 이게 우리나라의 중요한 은행이라고 하지만 70%가 외국인에게 넘어갔고 외국 은행이라서 수익을 창출해야 돼서 은행 지점도 다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돈들을 다 그냥 은행이 가지고 가게 되었다라면 이번에 이걸 지적해서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서, 법원에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지방은 지방대로 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지방에도 아주 큰 고객이면서 그것을 지방으로 환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좋은 방안들을 좀 찾아오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말씀만 더 보충해서 드리면, 제가 5년마다 심사해서 지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 권역을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방 권역에 대해서 보관·공탁금 운용 은행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는 지방은행을 포함해서 복수 은행으로 지정하도록 저희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만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복수라고 해야 신한하고 국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렇지 않고요. 지방권 은행이 복수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서울시도 신한이 했는데 우리가 같이한다든지 이렇게 2개더라고요, 큰 은행이.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방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이니 지방으로 환원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내용도 좀 자료로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들, 부칙의 적용례와 경과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가요?

○박균택 위원 25년부터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일단 법원행정처랑 다 상의해서 부칙 적용례를 만든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문제없는 거지요? 이게 25년부터 적용하게 되면, 지금 원래 저희가 작년에 법을 통과시켰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조금 늦어지더라도 별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가 일단은 출연금을 ‘출연해야 한다’가 아니라 ‘출연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 수익금의 범위, 방법, 조건 등에 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예, 알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이게 금년 법원 예산 편성할 때 작년 수익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여러 차례 준비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야당에서 모든 법을, 민생법까지 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이 법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통과를 못 시켰다라는 것도 하나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 한마디만……

○소위원장 김용민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그러면 차장님, 대법원장님께서 법원보관금을 지정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을 지정하는 것은 대법원규칙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행 지정하는 것은 어떤 절차로 하게 되나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가 공탁금관리위원회라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고요. 매년 10월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을 나눠서,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광주권에 대해서 공탁금 관리 은행을 지정하는 절차를 위원회에서 심사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각자 응찰을 하게 되면 그 은행의 프리젠테이션을 다 듣고 위원들이 최종적으로 투표를 해서 은행이 결정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 매년 이 400억 원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으로 추가 출연이 되는 거라서 굉장히 필요했던 법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국민의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영교 위원 그 전에 은행이 다 수익으로 가져간 것은 부당했으니까 내놔야 되지 않나요?

○소위원장 김용민 근거가 없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법원이 답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 다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법원보관금하고 공탁금하고 차이를 좀 더 설명드리면 공탁금은 그것을 회수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용수익금의 활용 필요성이 컸는데요 이 보관금을 진행하지 못했던 반대논거 중의 하나가 회수가 금방금방 되고 있기 때문에 채류시간이 짧다라는 논거가 많이 고려됐던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여기에 반대논거를 제기하자면 빨리빨리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은행이 가지고 있었던,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라도 보관금도 운용수익금을 환원할 수 있다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은 방향성을 정해서 추진을 하게 된 배경이라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한 가지 사례로 들면 제가 행안위원장 할 때, 지역화폐가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할 때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사면 나라에서 10%를 할인해 주고 90만 원을 내가 넣어 놓거든요. 그리고 1년, 2년 써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든 10% 할인을 받으려고 돈을 다 넣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지역화폐를 운용하는 회사가 가지고 운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이 돈 이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운용하면 언제고 우리 불편합니다. 그러니 이 돈을 지자체나 이런 쪽 금고에서 쓰시고 거기서 이자도 운용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 근거법을. 그러니까 이 돈이 그렇게 들어오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역이 은행에 넣어 놓고 그 이자를 다시 붙여서 다시 지역화폐 할인율을 높일 때 쓰는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새로 만드는 것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하지만 어떻든 언제나 아킬레스가 될 수도 있어서 잘 살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기록으로만 남겨 놓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알겠습니다.

원래 의결을 해야 될 순서이긴 하나 아직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안 들어오셔서 이 부분은 다음번 회의 때, 아니면 오늘이라도 들어오시면 오늘 처리를 하고 오늘 들어오시지 않으면 다음번에 의결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법안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8항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8)

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6)

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1)

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3)

1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0)
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5)
1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2)
1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3)
1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3)
1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4)
1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1)
1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7)
2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3)
2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2)
2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4)
2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4)
2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1)
2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7)
26.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8)
27.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0)
28.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6)
29.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4)
30.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5)
31.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9)
32.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5)
33.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6)

(11시31분)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33항까지 해사법원 설치 관련 2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기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법안심사자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33항까지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자료입니다. 심사대상 법률은 법원조직법 등 7건의 법률 26개 법률안이 심사대상입니다.

다음 페이지, 목차 보시겠습니다. 목차에서 간단하게 법률별 심사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9항까지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법은 지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섯 차례 정도 심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 결과를 토대로 법원행정처에서 마련한 대안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33항까지 연계 법률안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중재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이 연계 법률안들은 이번 법안소위에 처음 상정되었지만 이미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률을 논의할 때 주요내용에 대해서 함께 논의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 연계 법률안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에서 마련한 대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연계 법률안들이 오늘 새롭게 상정되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부터 간략히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33항까지입니다. 광규택·전재수·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48쪽입니다.

해사사건의 전속관할 등 규정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규택·전재수·박찬대 의원안은 해사사건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면서 증거보전의 관할에 해사법원을 추가하는 것을 공동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재수 의원안은 해사사건 관련 청구에 관한 관련재판적, 이송 규정을 신설하고 독촉절차의 관할법원에 해사법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찬대 의원안은 당사자가 다른 지역 관할 해사법원에 해사사건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개정안 등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해사법원이 설치됨에 따라 민사소송법에서 해사법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일반법원에서 사건이 이루어질 때보다 해사법원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확대 강화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음은 민사집행법, 58쪽입니다.

광규택·전재수·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59쪽을 보시겠습니다.

선박에 관한 강제집행 등 관할법원에 해사법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규택·전재수 의원안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관할법원에 해사법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박찬대 의원안은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을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들은 해사법원에 관할을 중복적으로 부여하거나 전속관할로 함으로써 해사법원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음은 소액사건심판법, 64쪽입니다.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액 해사사건에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해사법원의 관할사건 중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해사법원에서도 소액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음은 중재법, 67쪽입니다.

전재수·박찬대·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68쪽입니다.

해사 관련 중재사건을 해사사건 등을 전담하는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해사사건 또는 해사민사사건에 관한 중재사건을 해당 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기 위하여 관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신설되는 법원의 인적·물적 구성과 사건처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77쪽입니다.

곽규택·전재수·박찬대·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78쪽입니다.

책임제한사건을 해사사건 등을 전담하는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이 법에 따른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기 위하여 관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역시 신설되는 법원의 인적·물적 구성과 사건처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먼저 법원행정처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와 관련된 여러 법률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위를 거쳐서 상당한 심사가 이루어졌고요. 지난 마지막 소위 때 제기됐던 쟁점 부분도, 특히 국제상사사건의 표지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간에 이견이 있었습니 다라는 그동안에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접합점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전 발표드린 것처럼 허락해 주신다면 실무를 담당하는 사법지원총괄 이지영 부장판사가 신구조문대비표를 기점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자세히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 판사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여러 개 법률안에 대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제시하는 상황이라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요. 시간을 어느 정도로 말씀드릴까요?

○소위원장 김용민 지금 국힘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가능한 간략하게 하시고 국힘 위원님들이 오늘 만약에 안 들어오시면 다음번에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

다. 그것을 고려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 그러면 주요내용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구조문대비표 외에 심사경과와 주요쟁점이라는 유인물을 먼저 보시면 해사법원 설치안에 대해서는—해사법원으로 약칭을 하겠습니다—7월 1소위에서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로 설치할 것인지, 8월 1소위에서 설계 대강의 쟁점에 대해서 일부 합의를 하고 추가 검토사항을 거쳐서 지난 11월 1소위에서 마지막까지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국제상사사건의 범위라든지 관할구역을 남북으로 설계하는 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었고요. 그리고 1소위원장께서 개원 시기가 신축을 하면 좀 오래 걸리는데 2030년 내에 개원하는 방안 및 전문법관 인력계획 제시 요청을 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쟁점, 관할구역은 인천과 부산 법원은 남북으로 나누는 안으로 일응 협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해사법원의 전속관할과 지방법원의 중복관할의 예외를 설정하는 것도 일부 논의가 있었으나 접근성이 중요한 사건의 경우 중복관할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고요. 국제상사사건,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개원의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인물, 추가 검토보고 2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사법원이 설치되어서 사건 수가 증가하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지금 사건 수를 기준으로 좀 작은 법원의 규모 2개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인천·부산에 각 법관 9명, 직원까지 합하면 약 45명의 작은 법원이 설치될 것으로 보이고 가정법원급의 청사 규모가 필요한데 어떤 전문성이나 상징성, 전국에 2개 법원 밖에 없이 일부 사건을 전속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은 교통 요지에 독립 청사를 두는 것을 저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부지에 대해서는 부산에는 해수부 이전부지 가까운 곳에 부지를 마련할 것을 부산지역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인천의 경우에도 송도국제도시 내의 GTX역 준공되는 인근 부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예상하고 있어서 청사 부지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2페이지 보시면 저희는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기존의 전례에 따른 가장 원칙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 그 경우에 장점으로서는 안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위상도 정립하고 국제적으로도 좀 상징성 있는 모습을 갖출 수 있는데 단점으로는—3페이지 보시면—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요즘 여러 가지 환경적 규제 또는 허가 규제 등이 있어서 통상적으로는 6년 이상 신축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2032년 이후에 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반드시 2030년 이내에 개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저희가 아직까지 해본 적은 없지만 임차 청사를 활용한 다음에, 신축 기간 동안 임차해서 재판을 진행하다가 신축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2026년에 건물을 물색해서 한 2년간 리모델링을 하면 2029년 3월에는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저희가 법원 건물을 임차 청사로 활용해 본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법원에 법정 같은 아주 특이한 시설이 있어서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고 임차가 끝나도 원상회복의 부담이 상당합니다. 리모델링만 해도 수십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법원 청사는 높은 청사 보안 필요성이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들이 오고

여러 가지 민원인들도 있기 때문에 또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외관 같은 것 때문에 법원 청사를 임차해서 사용한 적은 없는데 최근에 너무나 법원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회생법원이 양재역 쪽의 큰 건물에 임차해서 들어가는 방안을 처음으로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회생법원은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일반법원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회의실 위주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가지 않은 길이고 해사법원의 어떤 상징성을 생각했을 때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개원 시기를 3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이라면 말씀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법관 인력 배치나 전문성은 저희야 당연히 해사법원이 설립되면 국제거래 전담재판 경력이 많은 전문적 법관을 해사법원에 우선 배치하고 항소심을 담당하게 될 인천·부산 고등법원에도 관련 경력이 있는 적절한 법관을 배치해서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셨겠지만 법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지금 발의된 법원의 설치 및 조직에 관한 법원 설치법, 법원조직법 외에 민사사건에 관한 민소법, 민집법, 소액사건심판법, 중재법, 선박소유자 책임제한법 이렇게 일곱 가지가 1소위에 상정되어 있는데요. 그것 외에도 해사법원이 해사행정사건을 담당함에 따라서 행정소송법 그리고 저희가 해사 관련 과태료 사건 담당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개도 개정이 필요한데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법사위 소관이기 때문에 함께 처리가 필요해서 신구조문대비표에 넣었고요.

그 외에 해사법원과 관련해서 함께 발의된 해양사고 조사·심판법,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도 함께 다 검토하였지만 이것은 농해수위 소관이라서 신구조문대비표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조문이 많고 특히 지금은 사건의 종류별로 전문법원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민사사건은 일반법원, 가정사건은 가정법원, 도산사건은 회생법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사의 일부를 떼어 내고 행정사건의 일부를 떼어 내서 전문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 마련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웠고 전문위원실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또 설명을 해야 된다면 아주 개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예.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 1페이지, 법원조직법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법원 조직 안에 넣는 것이고요. 위계는 1심 법원과 같은 위계로 설치 순서에 따라서 회생법원 뒤에 해사법원을 넣는 것으로 했고요. 본원을 두고 지원을 두지 않는 방안입니다.

2페이지, 7조(심판권의 행사) 부분은 사물관할, 그러니까 합의심판권과 단독심판권에 관한 규정인데요. 해사민사, 국제상사사건은 민사사건에 속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권을 규정을 했고요. 해사행정사건은 행정사건에 속하기 때문에 행정법원과 동일한 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행정사건은 원칙적으로 모두 합의부 관할이고요.

다만 사법자원 분배 효율을 위해서 간단하고 유형화된 사건은 재정단독결정을 통해서 단독판사가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2페이지 하단 판사회의, 3페이지 사무국은 모두 법원 설치할 때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규정입니다.

4페이지, 심판권은 심급관할에 관한 것인데요. 지방법원이나 행정법원과 동일하게 설계를 하였고요.

다만 민사 고액사건은 현재 고등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해사법원의 경우에는 민사 고액사건도 해사법원 항소심 합의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해사국제상사법원, 제7장으로 신설을 하였고 법원장, 합의부 관련 규정은 다른 법안하고 동일하고요.

제40조의10(심판권)이 가장 중요한 규정입니다. 박찬대 의원안을 토대로 하였고요. 다른 의원님들 안도 일부 반영해서 해사민사사건, 국제상사사건, 해사행정사건을 각목으로 규정을 하였고 어떤 사건이 해사법원에서 담당하게 되는지 알 수 있도록 가급적 표지를 구체적으로 넣되 좀 더 구체적이거나 입법이 좀 달라짐에 따라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5페이지는 해사민사사건이고요. 기존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6페이지, 2호가 해사행정사건입니다. 해사공법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서 그 해사공법이 적용되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하되 해사공법은 아래 가목부터 쪽 해사에 관련된 것임을 표지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국제상사사건입니다. 국제상사사건도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상사법률 관계 사건 및 관련 사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으로 규율을 하였고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사건이 무엇인지 가목부터 마목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상사사건 중에 특허 등 지재사건이라든지 좀 접근성이 중요한 소비자·근로 사건은 명시적으로 배제하였습니다.

그 외에 8페이지 하단에 국제재판부, 현재 특허법원에서 하고 있는데 당연히 해사법원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아서 넣었고요.

9페이지, 부칙이나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입법정책적 결정에 따라서 정해야 할 것 같고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심리의 계속 및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서 기존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 10페이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인천해사법원은 인천에, 부산해사법원은 부산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고요.

11페이지입니다.

관할구역은 인천은 강원·충청 이북 모두 포함이고, 부산해사법원은 전라도·경상도 이남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페이지, 민사소송법입니다.

민사소송법에는 민사사건에 해당하는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법 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박에 관련된 특별재판적을 계속 유지하면서 조금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은 구체화하였고요.

그다음에 24조에 지재사건에 관해서는 국제거래에 관해서 좀 특별한 재판적을 두었는데 국제상사사건에 흡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전의 규정에서 삭제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해사국제상사사건에서 아까 본 법원조직법 관련 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속적으로 관할한다는 점 규정하였고, 해사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의 심판권의 배분은 전속적이라는 점을 명시하였고요.

다만 같은 해사법원 사이, 인천하고 부산 사이의 토지관할은 임의관할임을 또 명시하였고요.

○서영교 위원 지금 그런 것까지 다 들어야 돼요?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 좀 생략을 할까요?

○서영교 위원 예.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 13페이지 하단에 관할이 애매할 때는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

14페이지,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서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병합 규정도 삽입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15페이지, 지방법원에서 처리하기에 적당한 사건은 편의적으로 이송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도 두었고요. 증거보전사건도 관련된 것은 해사법원에서 하도록 하였고 독촉사건도 마찬가지로입니다.

16페이지 하단에 관할합의에 대해서는 기존에 체결된 관할합의의 유효성과 효력을 존중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민사집행법입니다.

역시 선박과 관련된 집행사건은 해사법원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관련된 규정들을 모두 정비하였습니다.

18페이지, 선박은 해사법원에서 담당하지만 선박 지분이나 선박에 대한 청구권은 중복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서 그렇게 규정하였고요.

19페이지·20페이지, 가압류·가처분도 마찬가지로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역시 해사법원에서 소액사건도 담당하되 일반 지방법원과 중복관할을 인정하였습니다.

22페이지, 중재법입니다.

여기에서는 중재사건의 특수성, 중재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절차라는 점을 고려해서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굳이 해사법원으로 그것을 강제하기보다는 당사자 자치를 보장하는 중재법 취지에 따라서 그것을 존중하는 것으로 하였고요. 앞으로 해사법원의 전문화가 잘 달성되면 중재합의를 해사법원으로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4페이지, 선박소유자 책임제한법, 전형적인 해사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규정하였습니다.

26페이지, 행정소송법도 민사소송법같이 해사행정사건에 대해서 전속관할 규정을 신설하였고, 관련 청구소송 일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송 및 병합 규정을 두었습니다.

28페이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도 해사공법에 대한 과태료 사건은 해사법원에서 담당하되 여러 지역에 퍼져 있는 사건은 선택적으로 지방법원에서도 관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 질문 하나 있는데요.

○소위원장 김용민 지금 법무부 의견부터 먼저 듣고, 질문하실 거면 잠깐만 거기 계시면……

법무부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난번 소위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 오고 있는 사항으로서요 지금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실무자들 간 논의를 통해서 대부분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고 법원 대안에 상당히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법원과 이견이 있었던 해사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는 국제상사사건 요건과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상사사건의 요건이 당사자 자치 원칙을 중시하는 국제거래 실무를 고려해서 당사자 간의 관할합의를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해사법원에 사건을 집중시키기 위해 제외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국제상사사건 요건에 대해서 당사자 간 관할합의를 제외하고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모든 상사사건을 전속관할로 속하게 하면 사적자치에 중시하는 실무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고 당사자들의 불편과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이 논의 과정에서 고려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소위 이후에 법원과 추가 논의를 좀 진행했고요. 그래서 개정법 시행 이후에 불편과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개정법 시행 전에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전속관할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관할합의에 대해서는 그 유효성을 인정하며,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의 중복관할을 인정하고 소비자계약 또는 근로계약에 관한 사건은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의 재판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으로 법원 대안과 같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아까 먼저 질의하신다고……

○박은정 위원 일단 1안, 2안들을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필요한 공간이 1116㎡, 한 330평 정도 규모인 것 같고 두 가지 안 모두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공식적인 입장은 없으시겠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안을 조금 더 선호하거나 이 방안이 조금 더 낫겠다 이런 의견이신지, 어떤 의견이실까요?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는 기본적으로 청사는 신축을 해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지원총괄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상업용 임차 건물을 활용해서 법원을 운영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래

서 다른 각급 법원 설치 관련해서도 법원을 임차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가 조심스러운 입장인데요.

굳이 특수성을 따져 본다면 해사법원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민사법원하고 좀 다를 수 있을지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임차 건물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사법원을 설치하는데 시행 시기가 2030년을 넘어가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주문을 하셔서 저희가 그렇다고 한다면 임차를 했을 때 소요되는 기간을 따져 보면 29년까지 줄일 수 있겠다는 입장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청사가 신축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것은 그동안 오랫동안 계속해서 법원을 신축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외국 같은 데 나가 보면 법원이나 검찰청이 도심에 다른 어떤, 그러니까 그 법원이나 검찰청만을 위한 건물이 아니라 그냥 일반건물의 몇 개 층을 검찰청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법원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법원 건물, 검찰청 건물을 굉장히 크게 지어 가지고 그동안 운영해 왔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해사법원에 대한 수요가 지금 오늘내일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이 수요가 있는 거라서 저는 신속하게 임차해서 법원을 빨리 출범시키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대로 된 해사법원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법원에서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좋은 대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래서 지난번 소위 때도 위원님들이 많은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요 저희가 임차 청사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배포해 드린 자료에 반영했다라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임차와 신축을 병행하는 것은 어떤가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많이.....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가 기본적으로 임차를 얘기한 것은 신축할 때까지의 임차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속적인 임차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서, 2안은 신축을 하면 2032년 이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임차를 한다면 저희가 임차할 건물을 찾고 리모델링을 해서 2029년에 임차 건물을 활용하면 3년 정도 하고 새롭게 신축된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 3년 사이에 생기는 비용, 즉 임차비용과 설치비용, 철거비용은 좀 더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매몰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기존 법원 건물을 임차해서 활용하다가, 임차라기보다는 일부 활용해서 신축할 때까지 먼저 출범하는 방법은 어려운가요? 예를 들면 인천지방법원 혹은 인천고등법원의 건물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어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가 지금 관할 내,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서부지원이 여러 법원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건데 현재 부산 서부지원도 청사 사정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서요, 굳이 줄여서 한다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원 건물에 본원이 입주하는 위상의 문제도 있고 청사 사정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경우에도 지금 인천 북부지원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다면 인천 북부지원의 규모도 다시 달라져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현행 건물을 이용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은 답을 찾기가 어려워서 2안으로 중간 기간 동안 임차를 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심의관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국제상사 같은 경우에 국내 판결이 확정되면 여기 보면 해당 국의 의무 이행지가 외국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있고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도 있고 하니 외국에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집행 승인이 어떤 나라는 잘되지만 어떤 나라는 또 집행 승인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분석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외국 법원에서 집행 승인을 받는 것은 그 외국 법원의 승인 판결과 집행 절차에 따르기 때문에 그 요건이 우리랑 비슷하면 쉽게 해 주고 요건이 다르면 잘 안 해 주는 것이라 저희가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요즘 여러 가지 조약이나 협약 등을 통해서 그런 절차를 일원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들은 그런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외국 판결을 집행 승인하는 것은 우리 법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것을 처리하기가 어려운데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생기면 그런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국제상사법원이 만들어져서 활용이 잘되려면 여기서 한 판결이 외국에서도 집행 승인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다는 것들이 담보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베트남에서 얘기를 들어 봤는데 우리나라 판결이나 아니면 중재 같은 것들이 베트남 법원에서는 집행 승인이 기각이 많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수가 기각이 되고 있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인 것 같은데 비단 한 국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외에서 집행 승인이 잘되지 않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어떤 통계치나 이런 것들도 한번 미리 확보해 보시고 그 법원에서 집행 승인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법원과 그쪽 법원 간의 상호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하고 그게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면 소통을 해서 말씀하신 조약을 체결하거나 하는 방식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해사법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미리 사전에 점검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실 이 법도 국민의힘의 광규택 위원님이 하루라도 빨리 심의를 해 달라고 저희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오늘 소위를 국민의힘과 합의해서 일정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저희가 오늘 신속하게 심의하고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려고까지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들어오지 않으셔서 논의를 조금 더 이어 가는 것으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33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937)

3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239)

3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280)

(12시01분)

○**소위원장 김용민** 다음,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7항까지 이상 4건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기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법안심사자료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7항까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쪽입니다.

심사대상 법률안 현황입니다.

심사대상 법률안들이 시군법원을 설치하거나 전주가정법원과 그 지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 유형이 유사하므로 여기에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칠승 의원안은 인구 50만 이상인 시군에 시군법원 설치 노력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화성시법원과 시흥시법원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홍철 의원안은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성윤 의원안은 전주가정법원 그리고 그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호영 의원안은 전주가정법원과 그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을 신설하고 그리고 완주군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법원 신설과 관련해서 검토의견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들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전주가정법원과 그 지원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가사 사건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 화성시법원 등 시법원과 김해지원 등의 신설 또한 관할 지역 주민의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개정안의 논의 시에는 법원의 한정된 조직 인력, 자원 등의 효율적 배분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관할 인구 및 사건 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권칠승 의원안에서 특유한 50만 이상의 시군에 시군법원 설치 노력 의무 규정 관련해서는 사법 접근성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이지만 시군법원의 설치에 인구수뿐만 아니라 지리적 특수성, 사건 수 등 다양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원행정처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운 곳에 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사법 접근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찬성 입장이지는 합니다만 그 외에도 고려돼야 될 사항이 기존 법원과의 체계랄지 다른 법원과의 형평성의 문제, 아울러서 법원을 신축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 부처와의 재정적인 부담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 각급 법원 설치에 관련된 법률이 제안될 때 우리 소위에서 그러면 법원에서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을 하느냐,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명확한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제기를 예전부터 해 오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법원에서는 정책연구용역을 해서 법원을 신설할 경우에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고 그 요소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받아들이고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기획재정부하고 사이에 나름대로 일응의 기준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시군법원을 신설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새롭게 신설되는 법원의 인구수가 52만 명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졌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시군법원이 지방법원에서 신설되는 경우도 있고 지원에서 신설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지방법원에서 신설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당 지방법원의 인구수가 적어도 163만 명 정도는 유지돼야 된다는 측면과 지원에서 이것이 신설될 경우 기존 지원의 인구수가 52만 명 정도는 유지돼야 된다는 기존 법원의 인구수도 요소로 고려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접근성인데요. 대상 지역에서 기존 관할법원까지 평균적으로 23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자라고 해서 이 세 가지 기준을 시군법원 신설에 대한 기준으로 기재부와 협의해서 마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요건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신설되는 법원의 사건 수가 적어도 7000건 이상은 돼야 된다는 기준을 저희가 마련했고요. 각급 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들이 나왔을 경우에 있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기재부와 사전에 의견을 조율한 바 있고 저희가 국회에도 의견을 낼 때 이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과 회생법원과 같은 특수법원의 경우 이러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설치 필요성이랄지 그 법원의 역할 등을 고려해서 이런 기준이 아닌 좀 더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여부를 결정하자라고 기재부하고도 협의가 됐고요. 지난번에 통과가 된 대구·대전·광주 회생법원도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현재 제출된 각급 법원 설치에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전주가정법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가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서 가정법원 설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가정법원 미설치 법원 중에서 의정부 다음으로 전주가 가장 사건 수가 많기 때문에 전주 지역에 전문적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전주가정법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 일반법원의 경우에는 화성시법원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의 시군법원 설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이고요. 나머지 지원과 시법원에 대해서는 일부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해지원의 경우에는 이게 지방법원에서 지원이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지방법원의 관할 인구수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163만 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창원지방법원에서 김해지원이 분리되었을 경우에 창원지방법원의 관할 인구수가 64만으로 줄어들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 기준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시흥시법원의 경우에는 아주 미세하게 미충족된 부분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관할 인구가 52만 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측면이 있고요. 소요 시간이 23분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못 미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못했다는 측면.

완주군법원의 경우에는 신설되는 관할 인구가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기준에 못 미치고 그다음에 기존 법원 관할 인구수의 요건도 많이 못 미치는 측면이 있어서 완주군법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두 가지 요소가 많이 충족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준을 세워서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음,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원 설치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사법서비스의 접근성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려고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법원에서 설명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개별 안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성윤·안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주가정법원 관련해서는 인구수와 가사소송 사건이 더 적은 울산가정법원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입니다.

김해지원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법원에서 설명하신 요소 이외에 김해시의 인구가 창원 지방법원·가정법원, 본원 관할 인구의 약 45%에 달하기 때문에 분리 설치 시에는 본원 규모가 절반 정도로 축소되는 측면까지 고려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접근성과 관련해서도 김해시 인구가 가장 밀집한 북부동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지만 창원시와 인접한 진영읍 및 장유3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49%에 해당하는데요 접근성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소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군법원 관련해서는 화성시법원과 관련해서만 한말씀을 드리면 화성시청 인근에 설치

될 경우에 화성시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동탄 지역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은 오히려 악화되는 측면이 있고요. 시흥시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은 현재도 비교적 나쁘지 않은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운 위원님.

○이성운 위원 전주를 출신 이성운입니다.

행정처 차장님, 아까 의견 말씀하실 때 전주가정법원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맞습니다.

○이성운 위원 법무부차관님도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운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전주는 정말 지역도 5급 3특에서 소외돼 있지만 사법도 엄청 소외돼 있습니다. 1953년에 전주고등법원 설치 운동이 벌어졌다가…… 사실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이 항소를 하면 대구고등법원으로 재판을 받으러 갔어요. 그 과정에서 2박 3일 걸리고 3~4일씩 걸리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 전주고등법원 설치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고등법원은 광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전주 시민들이 끝없이 노력을 해 가지고 결국 2004년인가요, 광주고등법원 전주부가 설치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주 시민들은 사법서비스 분야에서도 이렇게 소외되는 거냐라고 말이 많았고.

제가 전주에 가 보니까 제일성이 전주가정법원이라도 좀 해 달라라고 요청을 많이 들었고 제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 만날 때도 꼭 전주가정법원을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차장님이나 차관님께서 전주 시민들께서, 전북 도민들께서 사법서비스 분야도 이런 소외를 받는 것을 잘 아시고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이 법이 통과되는 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출범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좀 더 물어볼게요.

차장님, 지금 들어 보면 기재부와 아까 마련하신 기준이 합리성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반면 그러다 보면 수도권에만 집중적으로 법원이 만들어지고 오히려 지방에서는 원활한 사법서비스도 제대로 못 받게 되는 점점 더 소외되는 양상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기준은 우리가 일응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지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니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 기준의 마련 필요성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정책연구용역을 맡겼고요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로 나온 것을 기초로 해서 기재부와 협의를 했는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또 광범위하다 아니면 너무 좁다라고 해서 서로 간에 조율을 거쳐서 나

온 것이기는 합니다만 일응의 기준이지 여기에 못 미친다고 절대 안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렇지요. 사실은 그 부분은 이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시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런 의미에서 김해지원을 보면 이게 찬성도 반대도 아닌 애매한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다른 시군법원과 달리 김해지원은 어떤 측면이 있냐 하면 원래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산지원이 분리됨으로 인해서 창원지방법원의 규모가 많이 작아졌고요. 추가적으로 이와 같이 김해지원까지 설치가 되게 되면 차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창원지방법원의 규모가 절반 정도로 작아지게 되고 전체 지방법원에서 아마 제주 다음으로 작은 법원이 될 우려성이 있고요.

접근성의 측면은 보충적으로 차관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의 기준으로 일단 통과는 되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다만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신설 법원을 통해서 기존 법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서 저희로서는 그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기존 법원의 형평성 개념보다는 김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사법서비스를 원활하게 받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저희가 정책을 고려할 때는? 창원지방법원의 위상이 낮아진다는 것이, 예를 들면 김해시에 있는 시민들한테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얘기인 거잖아요, 창원 시민들에게는 설득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김해 시민분들한테 설득력이 떨어지는 얘기일 것 같은데, 우리가 법원을 어디에 더 설치하느냐 아니면 승격시키느냐의 문제를 고려할 때는 그 문제보다는 접근성의 문제와 원활하게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본원과 지원의 관계라는 측면을 고려하다 보면 지금 본원과 지원의 규모가 거의 같아지는 형태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본원끼리 비교를 했을 때 작아지는 측면도 있지만 본원과 관내의 지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김해지원이 창원지방법원과 규모가 거의 같아지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결국 항소는 본원에서 할 것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그 사건 수 자체는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가 기존에 1만 7000건 정도를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분리가 됐을 때 김해지원이 한 7700건 정도로 예상되고요 창원에는 9300건 정도의 사건이 남아서 본·지원이 거의 비슷해진다고 분석을 하고는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런데 김해에서 단독 사건의 항소는 본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것을 고려한 사건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아닌 것 같은데.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여기 저희가 합의라고 하는 것은……

○**소위원장 김용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소위원장 김용민** 확인해 보시고.

사실은 인구 50만 넘는 도시에서 김해만 지원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라 가깝다고는 하더라도 결국 지방에서 창원과 김해는 거리가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적어도 지방에 설치되는 지원이나 시군법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완화된 입장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지금 정부에서도 5극 3특을 통해서 지방을 더 활성화시키고 결국에 지방을 살리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법원은 오히려 역행해서 ‘인구가 안 되니까 법원은 지금 설치 못 합니다’라고 하면 정부의 정책과는 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인구를 더 늘리겠다는 게 정부 정책인데 ‘인구가 안 많으니까 법원은 설치 못 해’라는 것은 조금 반대의 입장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7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를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 위원들이 지금 전부 다 불참하고 있어서 오늘은 처리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필요하면 토론 정도까지 하고 오늘 회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회의는 진행하지 않고 오전에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1)

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9)

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1)

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9)

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2)

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4)

(12시18분)

○**소위원장 김용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6건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세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진**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2항부터 7항 관련해서 심사 사항이 여섯 가지입니다.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제21대 및 22대 국회에서의 논의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고 22대 국회에서 21대 국회 법안심사1소위 대안과 동일하게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선고제도를 도입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피상속인에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의 대안이 마련되어 2024년 8월 2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후 24년 9월 30일 공포되었습니다. 다만 헌법불합치결정을 반영하기 위해 직계존속을 제외한 직계비속·배우자 등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제한 방식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선고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유류분 상실선고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는바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추후에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여분 조항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유류분에 기여분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 이외에 유류분 및 기여분과 관련한 현행 민법 추가 재정비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제시되어 이 부분 또한 추후에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참고 1과 7페이지에 있는 참고 2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속권 상실선고 또는 유류분 상실선고제도의 도입입니다. 백혜련·권칠승·서지영·김한규 의원안 1004조의2, 제1115조의2 관련 내용입니다.

각 개정안은 직계비속·배우자 등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선고제도 또는 유류분 상실선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민법 개정으로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가 신설되어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선고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직계존속을 제외한 직계비속·배우자 등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제한에 대하여는 여전히 위헌 상태가 존재하여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민법 개정을 통하여 제1004조의2로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선고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부양의무 등을 위반한 직계비속·배우자 등 그 밖의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제한 방식을 상속권 상실선고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할 것인지 유류분 상실선고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방안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상속권 상실선고제도를 확대하자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유류분 상실선고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간략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12페이지에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각 의원님들이 내신 법안의 조문대비표는 15페이지 이하에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유류분 제도의 개정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권 상실신고 또는 유류분 상실신고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4년 9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가정법원 재판으로 상실시키는 상속권 상실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상속인의 유류분을 상실시키는 방법으로 서지영·김한규 의원님 안과 같이 이미 도입된 상속권 상실제도를 직계비속·배우자 등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 방안이 상속인만이 유류분을 가지며 양자를 분리할 수 없는 현행 민법체계에 가장 부합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대습상속 규정 정비 관련해서 상속권 상실선고를 직계비속에게 확대할 경우 그의 직계비속에 대한 대습상속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규정 정비가 필요합니다. 현행 법이 상속 결격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대습상속권은 대습상속인의 고유의 권리로서 기존 상속인의 잘못과 별개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상속권 상실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한편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구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양자를 구분해야 할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유류분에 기여분에 대한 조항 준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분에 기여분 관련 조항을 준용하는 방법에 있어 우선 1008조 단서를 신설해서 기여상속인이 보상적 증여를 이미 받은 경우 그 보상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해서 보상적 증여의 범위에서 유류분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한편 김한규 의원안에 포함되어 있는 보상적 증여를 받지 못한 기여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1113조 2항과 3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안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간의 합의 또는 가정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한 경우에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이것을 반영해야 되는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되고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유류분 부족액 반환 방법을 가액반환으로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시에 공유관계 등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과 관련해서 시행일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되고, 적용례 및 특례의 경우에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정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도록 해서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기도입된 상속권 상실제도에도 같은 부칙 규정을 둔 점을 고려해서 김한규 의원님 안의 소급 적용에 찬성합니다.

한편 기발의된 의원안들은 유류분 상실선고를 가사소송으로 도입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유류분 반환은 민사소송이고 유류분 상실선고도 민사소송으로 도입하여 함께 선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부칙으로 가사소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우선 전문위원께서 상속권 상실이나 유류분 상실선고 부분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저희 의견을 한꺼번에 다 드릴까요?

○**소위원장 김용민** 예.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우선 첫 번째 쟁점인 상속권 상실선고의 확대와 유류분 상실선고제도의 도입 관련해서 기존에 직계존속에 한정해서 인정했던 상속권 상실제도를 확대해서 그 외 상속인에게 상속권 상실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은 현재의 판단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유류분 상실선고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의견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상속권 상실과 유류분 상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 외 상속인에 대해서는 유류분 상실만 인정하게 되는데 상속권 상실과 유류분 상실이 사실은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상속권 상실의 효과가 훨씬 큰데 지금 요건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 대습상속 규정 정비와 관련해서는 상속결격자나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의 직계비속의 대습상속을 인정할 수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만 배우자를 구별해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큰 쟁점으로 유류분에 기여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결정에서 명확하게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입법적으로 해결할지가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박지원·김한규 의원님 안으로 제시한 기여상속인에 대한 증여나 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1008조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피상속인으로부터 보상적 증여·유증을 받은 기여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되는 불합리함을 시정하는 내용은 입법취지에 공감을 하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우선 백혜련·권칠승·서지영·박지원 의원안에서 추가적으로 1118조를 개정해서 ‘유류분에 기여분을 준용한다’라는 추상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런 내용만으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해석상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1113조 2항과 3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있는데, 여기서 기여분이라고 해서 민법상 정해져 있는 기여분은 제도로서의 기여분이기 때문에 법원에 기여분 청구를 하고 기여분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유류분이나 상속재산 분할을 할 때 기여의 정도를 참작해야 된다는 것은 좀 더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류분 반환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여분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취지의 법률안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밀하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할과 관련해서도 지금 상속재산 분할이나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에서 하고 있는 가사사건이고요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사건입니다. 그러면 유류분 상실은 어디서 담당하게 할 것인지, 사실은 이게 패륜상속인을 구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정법원에서 심사를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의 문제고요. 기

여분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가 되면 반소 형태로든 해서 기여분 청구가 그 당시에 이루어져서 제도적으로 기여분이 운영되는데 유류분에 이 기여분을 반영한다고 하면 유류분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여분 청구가 다시 들어오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민사소송으로 봐야 될지 가사소송으로 봐야 될지 이와 같이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마지막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특별한 입장은 없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요소가 많다는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분 부족액 반환 방법을 가액반환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한 말씀……

○소위원장 김용민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예를 하나만 들어서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1살 때 버리고 가셨고, 이게 선원의 이야기인데요. 아버지가 1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재혼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남아 있는 자식이 큰아들, 누나 그리고 1살짜리, 셋이 같이 살았는데 고모 집에서, 할머니 집에서 컸어요. 그러다가 54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 1살 됐던 사람이 55살이 됐고 죽었어요.

이번 헌법불합치는 형제에게까지는 굳이 유류분 줄 필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는 1살 때 버리고 갔고 어렵지만 형하고 누나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살아왔는데, 이번 헌법불합치가 제가 만든 구하라법의 좋은 취지와도 연결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누구한테 가야 되지요? 형제에게는 굳이 유류분 할 필요 없다 이게 헌법불합치 내용인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여든몇 살인데 와서, 1살 때 버리고 갔는데 다른 아들 데리고 와서, 변호사 데리고 와서 남기고 간 보험금과 집을 다 갖고 갔어요, 싹 다. 이런 게 사례로 나와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직까지 못 한 일은,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눈독 들이지 마’ 그래서 그 할머니가 눈독은 못 들이게 됐는데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형제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가야 되나, 이 누나는 ‘국고로라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있습니다. 구하라 같은 경우에도 할머니하고 고모가 주로 키우거든요, 그런 경우.

지금은 엄마, 아빠 중에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눈독 들이지 마 그래서 저희가 구하라법은 통과시켰고, 그때 제가 막 반대했던 이유가 지금 이 얘기입니다. 부모를 돌보지 않은 자식들까지 와서, 두 명의 자식이 있는데 하나는 너무 열심히 돌보고 하나는 열심히 돌보지 않았으면 이 부모가 열심히 돌보지 않은 애한테 ‘나 안 줄래’라고 할 수 있게 하자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을 유류분제도로 넣어서 하자는 건데.

어떻든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를 한 번만 뒤집어 보면 배드 파더스라 그래 가지고 아빠가 전처의 자식이 있는데 양육비도 안 줘요. 그리고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나서 결혼을 했어요. 양육비를 안 주고 있는데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나서 결혼까지는 했어. 거기에 있는 아이는 나를 잘 돌보든 뭘 하든 애한테 내가 돈을 줄 건데 전처의 새끼들은 보니까 나한테 싸가지 없게 해, 그래서 안 줘. 이렇게 되면 이 제도로 가면 그

렇게 안 줘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인륜상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같이 넣어서 다 보시고, 부모를 정말 봉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양하지 않고도 그 부모의 돈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상실제도를 넣어서 한다 이게 맞을 것 같고, 그러나 이 부모가 나쁜 부모라 정작 내가 버렸던 애들한테 상속을 안 주려고 해, 이런 경우도 저는 구분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이게 가사소송으로 갈 거냐 아니면 민사로 갈 거냐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저는 이것은 선택하는 사람의 나름 아니겠느냐. 선택하는 자들이 가사로 가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하고, 가사로 가면 민법처럼 길게 안 가니 비송으로 빨리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서 구하라법도 가사로 갔는데, 가사도 있고 민사로 다 가능할 수 있게 해 놓으시면 아픈 사람들은 가사로 가서 해결하고 돈이 많아서 치열하게 싸워야 될 사람들은 민사로 가서 해결하고 이러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은 해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좋은 안을 주시면……

저는 약자의 눈으로 이 법을 보게 되었는데 나쁜 자식과 나쁜 형제도 있으니 그것은 정리하고, 그렇지만 나쁜 자식이 아니라 버려진 자식과 버려진 형제 같은 경우에는 또 보호해야 될 게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사소송에서 판단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차관님, 배형원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기표 김용민 박균택 박은정 서영교 이성운 장경태

○청가 위원(1인)

김재섭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 이세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